

경북지역 23개시군 특허기술 동향분석

2020. 12.

I

과업개요

☐ 과업명

- 경북지역 23개시군 특허기술 동향분석

☐ 수행기간 : 60일 이내

☐ 과업예산 : 금20,000,000원 이내 (VAT포함)

☐ 주요 업무내용

- 경북지역 23개 시군 특허DB 구축
- 경북 전체 및 23개 시군별 특허동향 분석
- 특허기반 경북지역 23개 시군 기술경쟁력 분석 및 진단

II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과업 추진배경

- ☐ 연구개발 예산의 지속적인 지출규모 확대에 따라 R&D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 분석 수요 확대
- ☐ R&D 결과물과 기업체 수요의 미스매치로 인한 국가 R&D사업 질적 성과 부진
 - 공급중심 R&D, 수요발굴시스템 부재 등으로 수요 없는 기술개발이 아닌 현장에서 원하는 기술개발 중요
- ☐ 본 과업에서는 경북지역 23개 시군의 특허기술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다각적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증거기반 정책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음
 - 중앙정부의 국가R&D사업 투자 확대에 맞는 차별화된 지역단위 경북형 과학기술 신규 아이템 발굴 및 정책기획, 예산 배분·조정, 사업 평가

등의 정책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2. 과업목적

- 본 과업은 경북지역 23개 시군의 기술경쟁력 분석 및 진단을 통해 전략분야를 발굴하여 경북지역의 전략적 투자방향과 종합적인 산업발전 기술로드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주요내용

- 경북지역 특허 DB 구축
 - 경북지역 23개 시군 특허 데이터 구축 및 기술분류
- 경북 전체 및 23개 시군별 특허기술 동향 분석
 - 최근 5년간 증가율, 연도별 특허 동향, 출원권자 연구협력 현황, 기술분류별 특허 동향, 상위출원인 현황, 출원인 유형별(산학연) 현황, 출원연도별 출원인수 및 1건당 출원인수, 특허권 법적상태 등 정량·정성분석 등
- 특허기술 역량분석을 통한 경북지역 과학산업 육성 전략 제언
 - 특허 기반 과학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시사점 도출

Ⅲ 과업 범위

1. 과업범위

- ☐ 공간적 범위 : 출원인 주소지에 대한 공간적(경상북도) 한정
- ☐ 시간적 범위 : 2014년~2020년 (출원일 기준)
- ☐ 내용적 범위 : 과업의 세부내용 참조

자료 구분	국가	검색 DB	분석구간	검색 범위
공개·등록특허 (출원일 기준)	한국	웹스	2014.01.01. ~ 현재	특허공개 및 등록 출원인 국가, 주소지

2. 과업수행 세부내용

- ☐ 특허 DB 구축
 - 경북지역 특허 DB 구축
 - 경북지역 23개 시군 특허 데이터 구축 및 분류
 - 특허가 갖는 서지정보를 활용, 경북지역을 주소지를 하는 출원권자에 대한 raw data 구축
 - 유효건수를 대상으로 [WIPO-IPC 분류체계]를 참고하여 총 35개의 기술 분야 분류
 - ※ 최종 raw data에는 23개 시군분류, 기술분류가 포함되어야 함
 - 분석 방법 설계 및 기획
 - 현 주소지 표기법에 의하여 실 주소지는 경북이 아니지만 '경북'이 주소지에 포함되면 추출 대상에 포함하고 제1출원인, 제2출원인, 제3출원인 구분 없이 경북 소재지인 경우, 추출대상으로 함
 - 경북에 과학기술 관련 정책수립 시 활용 가능한 기술분류 및 항목을 추출하고 기획보고서에 기여할 수 있는 맞춤형 분석 방법 설계

□ 경북 전체 및 23개 시군별 특허기술 동향분석

○ 경북 전체 특허 기술동향 분석

- 최근 5년 증가율, 연도별 특허 동향, 출원권자 연구협력 현황, 기술 분류별 특허 동향, 상위출원인 현황, 출원인 유형별(산학연) 현황, 출원연도별 출원인수 및 1건당 출원인수, 특허권 법적상태 등

○ 경북 23개 시군별 특허 기술동향 분석

- (연도별) 최근 5년간 증가율, 연도별 출원건수 및 점유율
- (기술별) 대표기술군 분석, 다출원 상위 IPC 도출 및 WIPO-IPC 매칭 등을 통한 기술분류, 세부기술별 현황
- (출원인별) 출원인 유형별(기업부문, 공공부문, 교육부문 등), 상위출원인 현황(주요기술분야, 최년 5년간 증가율 등), 출원권자 연구협력 현황 등
- 산업별 기업 출원동향, 지역별 인구당 특허생산성 분석, IP경쟁력 분석, 특허평가 등급 분석 등

○ 특허기술 역량분석을 통한 경북지역 과학산업 육성 전략 제언

- 경북지역의 특허 분석에 기반을 둔 산업별, 유망기술 분석
- 특허 기반 산업-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시사점 도출

□ 특허기술 역량분석을 통한 경북지역 과학산업 육성 전략 제언

○ 특허 기반 과학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시사점 도출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이행 기준

- 1) 본 과업지시서는 「경북 소재부품 종합기술지원단 심화기획 지원」 사업의 자유형상이 가능한 전고체 박막전지 핵심 제조기술 개발사업 관련용역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하 “갑”이라 함)와 과업수행자(이하 “을”이라 한다)가 상호협의의 원칙에 따라 수행한다.
- 2) 본 과업지시서는 「자유형상이 가능한 전고체 박막전지 핵심 제조기술 개발」 사업의 전략테마별 기초조사·분석 용역으로서 기초데이터 및 R&D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며, 본 용역의 결과물은 “갑”과 “을”이 공동 소유로 한다
- 3) 본 과업지시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기본방향과 내용을 필히 반영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 4) 필요시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한다.
- 5) 과업기간 중 필요시 과업범위 내에서 과업수행계획의 변경은 가능하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 6) 과업수행 상 모든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국내외 보고서 또는 중앙정부 및 도·시·군 등의 공식자료와 통계를 인용하고, 이 경우 “을”의 요청시 “갑”은 행정 및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협조를 지원한다.
- 7)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과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제시한다.
- 8) 최종 성과자료에 대해 “을”의 하자로 인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갑”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 9) “갑”은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천재지변 등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② “갑”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③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 10) “을”은 용역수행 중 “을”의 실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과업참여 연구진

- 1) “을”은 본 과업의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전문 인력은 본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 2) 과업수행 기간 중 “갑”이 추천하는 전문가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
- 3) “갑”은 본 과업수행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을”은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부적격 과업참여자에 대한 교체를 고려해야 한다.

3. 과업 착수

- 1) “을”은 계약체결 후 1일 이내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2일 내에 예정공정표 등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세부계획서 제출하여야 한다.
 - ① 과업수행 내용, 방향 및 방법
 - ② 각 분야별 참여 인력 명단(자격 및 경력), 조직편성표 및 투입계획서
 - ③ 사업추진계획 일정표, 보안 각서 및 기타 필요한 사항

4. 공정보고

- 1)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하여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을”은 필요한 자료 또는 업무진행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2) 보고회는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회 자료준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중간보고는 “갑”과 협의하에 서면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5. 과업의 보안사항

- 1) 과업수행에 필요한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보안과 관련되는 조사 자료는 “갑”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2) 과업내용 중 보완사항 및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3) 동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됨이 없도록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자료의 외부 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을 야기할 경우에는 “을”이 책임을 져야 한다(용역수행 주관기관은 모든 참여 연구원의 보안각서 징구)
- 4)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용역성과물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 5)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 6) 승인에 따른 보완요청 사항은 과학적·현실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 7) 과업의 보고서 및 도면의 인쇄와 자료의 관리는 ‘보안업무관리지침’에 따른다.
- 8) 용역과 관련하여 미리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완료 후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수행자는 즉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6. 과업의 변경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는 용역수행자와 협의 하에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1) 관계법령의 제·개정 등 정책변경 등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연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3) 각종 적용품의 변동이 클 경우
- 4) 기타 계약내용에 따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용역기간의 조정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연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 3) “갑”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이행으로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때
- 4) 본 과업 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과업이 중지되거나 본 용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8. 유관기관 협의자료 작성 제출

유관기관 협의 또는 심의가 필요한 경우 동 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 1) 정부기관의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2)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에 누락되어 과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내용을 보완한다.
- 3) 본 과업 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이 중지되거나, 본 용역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업무 추진 시 필요한 각종 협력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4) 본 과업수행 상 필요한 법규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법규 및 용역규정에 준하며 경미하거나 통상의 관계되는 사항은 항상 “갑”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5) 본 과업 완료시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 과오, 기술상의 오류 등 결함에 대하여는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IV 과업 일정 및 성과품 제출

☐ 과업의 보고

- 본 과업 추진 중에 생산된 산출물, 각종 보고서는 용역일정에 맞춰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시기 및 횟수, 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수시보고 : 최소 월 1회 이상, 계획대비 실적보고 및 진행상황 보고
- 최종보고 : 계약종료 7일 이전

* 보고는 상호협의 하에, 서면보고로 갈음할 수 있음

☐ 추진일정

NO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주)							
		1	2	3	4	5	6	7	8
1	특허추출 및 기술분류								
2	정량·정성분석								
3	경북지역 특허기술 역량분석								
4	경북 특허기술 제언								
5	결과 보고								

☐ 성과품 제출

- 제출시기 : 과업 종료일 이내
- 제출내용 : 최종보고서 1부, 관련 전자파일 1부